

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 세부지침

제정 2025. 03.
최근 개정 2025. 09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우송대학교 「학칙」 제36조제7항 및 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제17조의2에 따른 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특별시험에 의한 학점인정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, 어학 성적 향상, 전공능력 배양 등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.
②제1항에 따라 특별히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제3조(특별시험 실시) ①특별시험은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가 문제를 제출하여 학과(전공)교수회의의 검토를 거쳐 총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②특별시험의 시행 시기는 학과(전공)교수회의에서 정하여 학생들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특별시험의 합격은 95점(100점 만점) 이상으로 한다.
④공인된 어학시험성적 또는 자격증 또는 대회 수상 등의 실적이 있을 경우 본 조의 특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대체인정할 수 있으며, 세부적인 대체인정 자격의 범위 및 최대 인정학점은 [별첨 1]로 별도로 정한다.

제4조(학점인정) ①특별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생은 대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점인정 승인 신청을 하고 소속학과(전공)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학점인정 승인을 얻은 학생은 대학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교과목을 신청하며, 학과(전공)장은 해당 교과목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.
③제2항에 따라 학점인정이 승인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「성적평가 및 처리규정」 제8조에 따른 출석을 인정하며, 평가(수시 및 정기평가)는 특별시험의 결과를 준용하여 성적을 인정한다. 이에 따른 성적은 해당 교과목의 성적평가방식에 따라 A+ 또는 P로 인정된다.
④학점인정으로 성적이 평가되는 학생은 해당 교과목의 상대평가 모수에서 제외하고, 별도의 절대평가로 진행한다.
⑤이미 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을 재수강하는 경우에도 본 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적용할 수 있다.
⑥교양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‘소속학과(전공)장’ 대신에 ‘교양대학장 또는 과정별 책임교수’가 승인을 하여야 한다.

제5조(인정범위) ①특별시험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재학기간 중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②어학시험성적 또는 자격증 또는 대회 수상은 본 대학 입학 이후(휴학기간도 포함)에 취득한 것만을 인정한다. 다만, 어학시험성적의 경우 그 성적의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③학생의 모국어에 해당되는 어학시험성적으로는 제4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④보건·복지계열의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졸업을 위해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는 교과목은 제4조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⑤학점인정은 해당 자격요건에 따라 승인된 학점의 범위 이내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며, 2개 이상의 자격요건을 합산하여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.

제6조(기타) ①제3조제4항에 의한 동일한 실적(자격 증빙)이 교양 또는 전공에서 중복으로 해당될 경

우 학생은 본인에게 유리한 1가지로만 선택하여 학점인정 신청이 가능하다.

②제4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학점인정의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를 할 수 없으며, 교과목 수강변경 또는 수강철회 등 학생 자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의 책임으로 한다.

③학생이 관련 실적(자격 증빙)을 위변조하여 부당하게 학점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학점인정을 취소하고 F학점으로 처리한다. 또한 향후 본 지침에 의한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, 학칙 제 54조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.

④기타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.

부 칙(2025. 03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부지침은 2025년 3월 24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5. 09.)

제1조(시행일) 이 세부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.